

교도 법위 향상과 훈련

전홍진 교무(만덕산 훈련원)

1. 법위 향상과 훈련의 관계
2. 시대에 맞는 정기훈련의 정착 방안 모색
3. 시대에 맞는 상시훈련의 정착 방안 모색
4. 법위등급에 맞는 법위사정 기준의 마련
5. 정책 제언

1. 법위 향상과 훈련의 관계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①섯 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 · 특신급 · 법마 상전급 · 법강항마위 · 출가위 · 대각②래위니라.”

이는 『정전』 ‘법위등급’에 나온 내용으로 6등급의 법위가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등급의 법위가 있다는 것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가 깊을수록 그 법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수행’ 이란 말은 ‘훈련’ 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 원기 17년에 발행된 초기교서 『보경 육대요령』은 현 『정전』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데, 『보경 육대요령』 목차에는 ‘수행편’이라는 말 대신 ‘훈련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소태산 대종사가 ‘훈련’ 이란 말을 ‘수행’ 이란 말과 다르지 않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원기 10년에 발표된 훈련법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다.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제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 취사를 주제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① 재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된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재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므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조화된 훈련을 하게 되면 법위 향상도 빠

르게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대산종사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대종사님께서 밝혀 주신 정기훈련 11과목과 상시훈련 12과목으로 훈련하면 누구나 다 불보살의 인격을 이룰 수 있고 제생의세의 대임을 달성시킬 수 있으며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³⁰⁾라고 하였다.

2. 시대에 맞는 정기훈련의 정착 방안 모색

『정전』 상시훈련법 중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4조에는 “매년 선기(禪期)에는 선비(禪費)를 미리 준비하^①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①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정기훈련을 받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기훈련의 필요성을 초기교서인 『보경 육대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무리 상시용용 주의사항 6조가 있^① 공부자가 일분일각도 공부를 놓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기 전문공부를 하지 못하면 범상한 근기와 약한 지혜로 장원(長遠)한 공부의 길을 능히 개척하기^①려울 것이다. 고로 상시용용 주의사항을 이행할 원동력을 얻게 하기 위해^① 힘에 미치는 대로 학비를 준비한 후 다소간(多少間)이라도 전문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상시훈련을 이행할 원동력을 얻게 하는 정기훈련은 교단 초기에 충분히 이루^①졌다. 초기교서인 『보경 육대요령』과 원기 28년에 발행된 초기교서 『불교정전』에는 “매년 삼동(三冬)이 되고 보면 ①떠한 방면으로든지 비용금을 준비하^① 가지고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선원에 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를 주의” 하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매년 2-3개월 정도는 정기훈련에 입선하^① 전문 공부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사회가 아니고 산업정보화 사회인 현시대에 매년 2-3개월 동안 입선하^① 정기훈련을 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훈련을 이행할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기훈련이 꼭 필요한바 이를 현시대에 ①떻게 정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단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출가교도는 매년 1주일의 정기훈련을 나고 있고, 재가교도는 1박 2일의 정기훈련을 나고 있다. 초기교단에서 시행된 정기훈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이렇게 부족한 정기훈련으로는 상시훈련을 이행할 원동력을 얻기 ①렵다. 현재 교도들의 상시훈련이 ‘상시훈련법’에 근거하^① 잘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 때문일

30) 대산종법사, 『법문집』 II, 원불교출판사, 1980, 170-171쪽.

것이다.

현시대에 맞게 정기훈련 기간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가교도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중도훈련원에서 1주일 정기훈련을 하고, 추가로 기타 다른 훈련원에서 1주일이라도 정기훈련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① 주면 좋겠다.

그리고 재가교도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박 2일의 교도정기훈련을 훈련원에서 나고, 추가로 교당에서 1-2주일 정기훈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훈련원에서 정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선기(禪期)에는 선비(禪費)를 미리 준비’ 하는 풍토를 만들^① 선비로 인한 장애를 없애면 좋겠고, 교당에서 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1달에 1-2일씩 교당 자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고 훈련원에서 출장 훈련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시대에 맞게 정기훈련을 정착하는 데 있^①서 ‘예회’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 매 예회(例會)날에는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하자는 뜻을 『보경 육대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기 전문공부를 할 계계(階梯)가 되지 못한 회원에게는 매월 삼육일(三六日)이라도 성실히 참예하^① 1년 내 36일의 정기훈련을 받게 함이요, 비록 정기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도 10일만에 한 차례씩 공부에 대한 성의를 장려하며 길을 밝히기 위하^① 인간생활의 모든 사무를 미리 준비 할 것은 준비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한 후, 그날은 기^①이 참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회는 준정기훈련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조창기에는 예회가 10일에 한번씩 있^①서 1년에 36일의 정기훈련이 되었지만, 지금은 1주일에 한번씩 있으므로 1년에 52일의 정기훈련이 된다.

그런데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예회는 교무의 일방적인 설교와 성가가 중심이 되^① 설교하는 교무와 듣는 교도의 관계만 있을 뿐 진정한 준정기훈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예회가 준정기훈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회가 변하^①야 하는바 예회에 정기 훈련 과목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예회가 되^①야 할 것이다. 교정원 교학훈련부에서는 ① 떻게 예회가 준정기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예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① 변화를 주^①야 할 것이다. 교단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기가 ①렵다면 원하는 교당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예회 식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겠다. 미국 현지인에 맞게 진행되는 원달마센터나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에서 진행되는 예회는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본다.

3. 시대에 맞는 상시훈련의 정착 방안 모색

『원불교헌규집』, 「교도법위사정규정」의 제6조와 제7조의 2를 보면, ‘법위의 승강은 지난 3년간의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법위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위사정에 반영한다’고 되 있다. 법위 승강에 반영되는 지난 3년간의 수행실적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출가교도는 1년에 7일 정기훈련에 입선하므로 나머지 358일은 상시훈련을 해야 하고, 재가교도는 1년에 1박 2일 교도정기 훈련에 입선하므로 나머지 363일은 상시훈련을 해야 한다. 상시훈련 기간이 정기훈련 기간에 비해 출가교도의 경우는 51배, 재가교도의 경우는 182배가 많다. 이렇게 상시훈련 기간이 긴 만큼 상시훈련을 개인에게만 맡겨 둘 경우 자력이 없는 공부인은 상시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단을 통해 이러한 상시훈련이 정착되도록 하였다.

상시훈련법 중 ‘상시용용 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상시용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는바,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상시훈련을 교화단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다. 재가·출가를 물론하고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교화단에서 ‘단원으로서 매일 일기 조사하는 법’과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성적을 매월 조사하는 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①기서 일기는 상시일기로서 상시용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물론 혜시·혜수와 계문 및 의견제출을 포함하는 것인바, 이는 공부와 사업을 모두 훈련하는 법으로서 또 삼대력(三大力)을 촉진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초기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상시일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를 칭찬하며 “상시일기장이 저승의 재판 문서이다.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로만 적 놓는다면 염라국 죄 판관의 문초는 틀릴지 몰라도 이 기록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제 스스로 복이 얼마 쌓였는지 죄가 얼마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³¹⁾라고 하였다.

원기 9년 불법연구회를 공개한 후 조단된 교화단에서는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이 활발히 권장되고 시행되고 있다. 단원들은 각자의 상시훈련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일 일기 조사를 하고, 단회에서 단장은 단원의 일기성적을 매월 조사함으로써 단원들의 공부·사업 성적을 조사하였다.

31) 이공전, 『대종경선의록』, 원불교출판사, 1995, 60-61쪽.

매월 1차씩 지정된 일자에 시행하기로 한 단회는 원기 13년부터 매월 16일 단원 예회로 시행되었다.³²⁾ 매월 6일·16일·26일에 보는 예회 중 16일 예회를 단회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① 단장은 매월 16일에 1회씩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고, 매년 음 12월 26일에는 교무부에 단원의 12개월 성적을 보고하였다.³³⁾ 그러나 원기 19년(1934) 5월부터는 매주 일요일로 예회 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둘째 일요일을 단회일로 정하^① 오전 오후를 다 보기로 하고, 셋째 일요일에는 오전은 예회를 보고 오후는 각 단장이 단원의 일기 성적조사를 하기로 한다.

이때 단장은 단원의 상시훈련에 대한 성의를 권면하고 단원에 대한 상시훈련 방법을 지도하며, 단원의 상시훈련 성적을 매월 조사 기재하며, 단원 공부의 진퇴를 대조하^① 본인에게 주지 권면³⁴⁾하^①야 한다. 그리고 단원은 항상 자기의 양심을 대조하^① 선악간^①떠한 일이라도 사실을 기재한 후 사실로써 단장의 조사와 문답에 응하^①야 한다.³⁵⁾

이렇게 교단 초기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권장되었던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은 원기 30년 일제에 의해 교화단 조직이 금지되면서 거의 시행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이후 초기 교화단은 해방 후 혼란한 정국과 건국사업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재정비의 과정이 없이 방치되^① 그 원형이 회복되지 못하고 기존의 단 조직이 와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기 교단에서 교화단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①었던 단원들의 상시훈련이 더 이상 교화단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되^①지지 못하고 단원 각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이^①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초기 교단에서 시행된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상시훈련을 정착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단적으로 단장과 단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①야 하며, 교육을 위한 교화단 교재를 원기 16년 발행된 초기교서인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에 근거하^① 만들^①야 하며, 단원들의 정도에 맞게 단 조직을 하^①야 하며, 초창기와 같이 ‘정식일기, 간이일기, 유무념’ 등 단원 각자의 형편에 맞는 상시일기를 쓰도록 하^①야 할 것이다.

4. 법위^⑨급에 맞는 법위사정 기준의 마련

『정전』 ‘법위등급’에 나온 바와 같이 6등급의 법위는 공부인의 수행 정도 곧 훈련 정

32) 「월말통신」 제3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1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20쪽.

33) 「월말통신」 제1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1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12쪽.

34)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원불교 교고총간 4』, 원불교출판사, 1994, 33쪽.

35)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원불교 교고총간 4』, 원불교출판사, 1994, 57쪽.

도에 따라 정해진다.

교육에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는 밀접한 관계로 맞물려 돌아가야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교육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잘 마련해야 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①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교육평가를 잘 하^②야 한다.

법위등급에 나오는 각 법위에 대한 경지는 목표라 할 수 있고, 훈련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법위사정은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단은 전교도의 법위 향상을 위해서 법위 향상을 실현시키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대한 시스템을 잘 마련하^③야 할 것이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법위가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 『정전』 ‘법위등급’에 근거하^④ 공정한 법위사정을 하^⑤야 할 것이다.

공정한 법위사정이 되려면 ‘법위등급’에 나온 바와 같이 법위사정은 철저하게 공부인의 수행 정도 곧 훈련 정도에 대한 평가로 이루^⑥져야 한다. 그리고 훈련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법위등급’에 나온 각 법위에 대한 설명과 같이 정성적 평가이^⑦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결석으로 학교를 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알차게 한 학생들은 그러한 실력이 양성될 것이고, 가방만 들고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그러한 실력이 양성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가교도로서 교당을 오래 다녔다고 다 삼대력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출가교도로서 출가한 연수가 높다고 다 삼대력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며, 정기훈련과 교학단회를 안빠지고 참석했다고 다 삼대력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대한 내실 있는 공부가 있^⑧야 삼대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내실 있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매일 스스로 자신의 삼학 공부를 점검하도록 단원들이 상시일기를 쓰게 하였다. 이러한 상시일기를 통해 매일 자기 자신의 삼학 공부를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공부를 권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단장은 1 달에 한 번씩 단원의 상시일기 성적을 감.율.병.정.무.부 등으로 정성적 평가를 하고 단원의 상시훈련에 대한 성의를 권면하도록 하였고, 매년 연말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받은 결과 기질 변화가 ⑨ 정도까지 되었는지 대조하기 위하^⑩ 단원의 신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장은 단원의 12개월 상시일기 성적과 함께 그 신분검사한 바를 교무부(현 교학훈련부)에 보고하였다. 그리하^⑪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매 3년마다 법위사정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교단의 법위사정은 지난 3년의 수행 실적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⑫진다. 그 기준

은 ‘법위등급’에서 밝힌 법위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현규』 ‘교도 법위사정 규정 제19조’이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이 있는데 이 ‘세부기준’은 재가교도 기준과 출가교도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재가교도의 세부기준과 출가교도의 세부기준이 다른 것은 그 세부기준에 ‘교도 법위사정 규정 제19조’에 따른 정성적 평가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립, 급수, 수련기간, 정기훈련 이수①부’ 등 재가교도와 출가교도에게 서로 다른 정량적 평가 기준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위사정의 세부기준이 ‘교도 법위사정 규정 제19조’에 부합된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공부인의 수행 정도 곧 훈련 정도에 따라 법위가 정해지는 만큼 훈련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①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훈련에 대한 평가는 재가교도의 경우 1년에 1박 2일 진행되는 교도 정기훈련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이며, 출가교도의 경우 3년간 ‘상시훈련, 정기훈련, 단활동’이 60% 이상 되①야 한다는 정량적 기준이 있을 뿐이다.

향후 법위사정 세부기준에는 단원이 매일 상시일기 조사한 내용과, 매달 단장이 단원의 상시일기를 조사한 성적과 신분검사 내용 등이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하①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위사정이 진정으로 공부인의 수행 정도 곧 훈련 정도에 따른 평가가 될 수 있는 법위사정 기준을 마련하① 『정전』 ‘법위등급’에 부합하는 공부인이 승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정책 제언

1) 교단적으로 시대에 맞는 정기훈련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①야 한다.

현시대에 맞게 정기훈련 기간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가교도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중도훈련원에서 1주일 정기훈련을 하고, 추가로 기타 다른 훈련원에서 1주일이라도 정기훈련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① 주면 좋겠다.

그리고 재가교도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박 2일의 교도정기훈련을 훈련원에서 나고, 추가로 교당에서 1-2주일 정기훈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훈련원에서 정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선기(禪期)에는 선비(禪費)를 미리 준비’ 하는 풍토를 만들① 선비로 인한 장애를 없애면 좋겠고, 교당에서 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1달에 1-2일씩 교당 자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고 훈련원에서 출장 훈련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회가 준정기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회에 정기훈련 과목들을 적절히 활

용하는 예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원 교화훈련부에서는 어떻게 예회가 준정기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예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교단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면 원하는 교당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예회 식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겠다. 미국 현지인에 맞게 진행되는 원달마센터나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에서 진행되는 예회는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본다.

2) 교단적으로 시대에 맞는 상시훈련의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초기 교단에서 시행된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상시훈련을 정착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단적으로 단장과 단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위한 교화단 교재를 원기 16년 발행된 초기교서인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에 근거하 만들어야 하며, 단원들의 정도에 맞게 단 조직을 하여 하며, 초창기와 같이 ‘정식일기, 간이일기, 유무념’ 등 단원 각자의 형편에 맞는 상시일기를 쓰도록 하여 할 것이다.

3) 교단적으로 법위등급에 맞는 법위사정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법위사정 세부기준에는 단원이 매일 상시일기 조사한 내용과, 매달 단장이 단원의 상시일기를 조사한 성적과 신분검사 내용 등이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위사정이 진정으로 공부인의 수행 정도 곧 훈련 정도에 따른 평가가 될 수 있는 법위사정 기준을 마련하 『정전』 ‘법위등급’에 부합하는 공부인이 승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